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049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신정동 153번지, 신정동 153의1번지, 신정동 153의2번지를 하중동에 편입함(개정연혁표 6)

## 3. 개정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나.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

## 4. 개정조례 안 : 따로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0. 8. 5 ~ 8. 24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(2010. 8. 26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개정연혁표6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개정연혁표6)

신정동 153번지, 신정동 153의1번지, 신정동 153의2번지를 하중동에 편입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&lt;신 설&gt;</u>	(개정연혁표6) <u>신정동 153번지, 신정동 153의1번지, 신정동 153의2번지를 하중동에 편입한다.</u>